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**외국환거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**

제출자	국무위원 홍남기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‘21.1.20일 발표한 「외화유동성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」의 후속 조치로서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·운영,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완화 및 이와 별도로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

3. 주요내용

가. 외환건전성협회의 설치·운영(안 §40)

-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설치함

나.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완화(안 §21의7)

-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

다. 한국은행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(안 §39)

-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련기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4. 7. ~ 2021. 4. 27.)

대통령령 제 호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7제1항 중 “1년”을 “제21조의6제2항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”으로, “2회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”를 “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내게 할 수 있으며, 분할납부 비율과 기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”로 한다.

제39조제8항 중 “기획재정부장관은”을 “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”으로 한다.

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제41조 및 제42조로 하고,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(외환건전성협의회) ①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 관계 기관 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외환유출입 및 외국환수급 상황의 점검·분석
2. 이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·규제 및 외환건전성부담금 운영에 관한 사항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의7(분할납부)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<u>1년</u> 이내의 기간 동안 <u>2회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</u>	제21조의7(분할납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1조의6제2항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1년</u> ----- <u>4회</u>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내게 할 수 있으며, 분할납부 비율과 기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·집중·교환·분석 등) ① ~ ⑦ (생략)	제39조(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·집중·교환·분석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<u>기획재정부장관은</u> 외환정보 분석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⑧ <u>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는</u>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제40조(외환건전성협의회) ①</u> <u>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 관계 기관 간 협의가</u>

3. 그 밖에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, 자본유출입 변동 관리 및 정책적 대응능력 제고 등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기획재정부 제1차관

2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

3. 한국은행 부총재

4.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

④ 협의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한다.

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
·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
에 외환건전성협의회(이하 “협
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
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외환유출입 및 외국환수급
상황의 점검·분석

2. 이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
급기관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
· 규제 및 외환건전성부담금
운영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외환거래 모니터링
및 사후관리, 자본유출입 변동
관리 및 정책적 대응능력 제
고 등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
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
인정하는 사항

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
으로 구성한다.

1. 기획재정부 제1차관

2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

3. 한국은행 부총재

4.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
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

④ 협의회 의장은 기획재정부

제1차관으로 한다.

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
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
부장관이 정한다.

제40조·제41조 (생략)

제41조·제42조 (현행 제40조 및
제41조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753